# 리걸테크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검토의견서

2024. 9. 23.

##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가. 제안이유

현행「변호사법」에서는 법률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유상의 법률 사무는 원칙적으로 변호사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누구든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 무의 수임에 관하여 유상으로 특정 변호사나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IT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법률분야에서도 이를 활용한 리걸테크(LegalTech)의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인 가운데 일부 법률서비스플랫폼 사업자와 변호사단체 사이에 「변호사법」위반 여부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리걸테크를 통하여 법률소비자에게 폭 넓은 접근성을 보장하고 관련 기술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측면과 함께 우리 사회에서 변호사라는 직무가 가지는 전문성과 법률서비스의 공공성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리걸테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구체적 자격과 리걸테크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리걸테크산업의 진흥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을 새롭게 제정함으로써 IT기술을 바탕 으로 한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 나. 주요 내용

- 1) 이 법은 리걸테크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리걸테크산업의 기반조성을 통하여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2) 국가는 리걸테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법률분야종사자와 리걸테크서비스사업자등간의 상생협력과 조화로운 발 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안 제3조).
- 3) 법무부장관은 리걸테크산업의 육성·진흥을 위하여 리걸테크산업육성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리걸테크산업육성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 4)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리걸테크산업 육성기반의 조성 및 기술개발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지원할 수 있음(안 제8조).
- 5) 리걸테크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요건을 갖추어 이 법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함(안 제10조).
- 6) 리걸테크서비스사업자는 리걸테크서비스의 이용으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보상을 위하여 보험계약에 가입하여야 함(안 제13조).

- 7) 법률분야종사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리걸테크서비스의 범위를 각각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14조 및 제15조).
- 8) 법무부장관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리걸테크서비스사업자등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자료의 제출,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지시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및 제17조).

#### 2. 법률안 조문내용

리걸테크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리걸테크산업을 진흥하고, 리걸 테크서비스를 신뢰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양질의 법률 서비스 제공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리걸테크"란 인공지능 또는 그 밖의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법률분야종사자의 업무 수행을 보조하거나 법률분야종사자가 아닌 개인 이나 법인、단체 등의 법률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활용되는 기술을 말한다.
- 2. "리걸테크서비스"란 리걸테크를 활용하여 제공되는 법률 분야의 서비스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학력, 경력, 업무실적 등 법률분야종사자에 관한 정보제공
  - 나. 자동화된 법률 자문
  - 다. 구체적 사건에 대해 법률을 적용한 결과의 예측

- 라. 자동화된 법률 문서 작성수단의 제공
- 마. 법령, 판례, 주석 등 법적 분쟁의 해결을 위한 정보제공
- 바. 논문, 보고서, 보도자료, 신문기사 등 법률자료의 제공
- 3. "리걸테크산업"이란 <u>리걸테크서비스</u>를 통하여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 4. "<u>리걸테크서비스사업자"란 리걸테크서비스</u> 제공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 5. "법률분야종사자"란 법률분야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자로서 변호사, 변리사, 공인노무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행정사, 세무사, 채권 추심업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리걸테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법률분야종사자와 리걸테크서비스사업자간의 상생협력과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국가는 리걸테크 산업 관련 대기업,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간의 상생 협력과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리걸테크산업의 육성과 지원, 리걸테크서비스사업자의 자격 및 제공되는 리걸테크서비스의 범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장 리걸테크산업 육성 등

-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 법무부장관은 리걸테크 산업의 육성·진흥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리걸테크 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1. 리걸테크 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

- 2. 리걸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 3. 리걸테크 산업에 필요한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 4. 리걸테크 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 및 법령 개선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리걸테크 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
- ② 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리걸테크 산업 육성 시행계획 (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 ③ 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④ 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2년마다 리걸테크산업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 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실태조사의 방법、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리걸테크산업 육성기반의 조성) ① 정부는 리걸테크산업 육성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리걸테크 관련 시설, 정보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
  - 2. 리걸테크 관련 공공데이터의 확보 및 공개、가공、유통
  - 3. 리걸테크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연수
  - 4. 리걸테크산업 육성기반의 조성을 위한 국제협력
  - 5. 리걸테크에 관한 정보와 통계의 수집 · 분석 및 유통
  - 6. 그 밖에 리걸테크산업 육성기반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② 정부는 법령 자리 등 리걸테크 관련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제공할 수 있는 정보체계를 운영하여야 한다.
- 제7조(기술개발 등) ① 정부는 리걸테크서비스와 관련된 기술개발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② 정부는 리걸테크서비스와 관련된 기술의 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보호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8조(자금의 지원)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1. 제6조제1항에 따른 리걸테크산업 육성기반의 조성
  - 2. 제7조제1항의 리걸테크서비스와 관련된 기술개발
  - 3. 리걸테크서비스사업자로서 창업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
  - 4. 그 밖에 리걸테크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제9조(업무의 위탁)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법무부장관의 소관에 속하는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단체 또는 「고등교육법」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에 위탁할 수 있다.
  - 1. 제6조제1항에 따른 리걸테크산업 육성기반 조성에 관한 업무
  - 2. 제7조제1항에 따른 리걸테크서비스와 관련된 기술개발에 관한 업무
  - 3. 리걸테크서비스사업자로서 창업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업무

## 제3장 리걸테크서비스의 제공 등

- 제10조(허가) ① 제2조제2호나목 및 다목의 리걸테크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자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한다.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본금의 보유
    - 2. 변호사를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및 시설·장비의 보유
    - 3. 그 밖에 리걸테크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 병경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인의 경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임원으로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을 수 없다.
  - 1. 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이 법에 따라 허가가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② 제1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무부장관은 3개월 이내에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소를 폐쇄하여야한다. 다만, 법인의 임원 중 그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개월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조(허가의 취소) 법무부장관은 리걸테크서비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 2. 제10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
  - 3. 그 밖에 이용자 보호 또는 건전한 법률시장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제13조(피해보상보험 계약) ① 제2조제2호나목 및 다목의 리걸테크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자는 리걸테크서비스의 이용으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보상을 위하여 보험계약에 가입하여야 한다.
  - ② 피해보상보험계약의 내용은 이용자의 피해를 보상하기에 적절한 수준이어야 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법률분야종사자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리걸테크서비스의 범위) 법률 분야종사자를 대상으로 리걸테크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리걸테크서비스사업 자는 법률분야종사자의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범위 내에서 제2조 제2호 각 목에 따른 리걸테크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 제15조(일반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리걸테크서비스의 범위) ① 법률분야종 사자가 아닌 개인이나 법인、단체 등(이하 "일반인"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리걸테크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리걸테크서비스사업자는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리걸테크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단, 리걸테크 서비스사업자는 제2조제2호 가목, 나목, 라목, 마목 및 바목에 따른 리걸 테크서비스는 일반인의 법률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범위에서 유상으로도 제공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일반인에 대하여 리걸테크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해당 정보를 구체적인 사안에 적용을 할 때에는 반드시 법률분야종사자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 제4장 감독 및 시정조치

- 제16조(감독) 법무부장관은 리걸테크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이 법의 위반 사항이 의심되는 경우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리걸테크서 비스사업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의 명령을 할 수 있다.
- 제17조(시정조치)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리걸테크 서비스사업자에 대하여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 1. 제10조제3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2. 제13조에서 정하는 피해보상보험계약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 3. 그 밖에 리걸테크서비스사업자가 그 직무상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제18조(영업의 정지 등) ① 법무부장관은 리걸테크서비스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 1. 제1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 2. 제10조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 3. 제17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4.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을 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9조(청문)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 1. 제12조에 따른 리걸테크서비스사업자의 허가의 취소
  - 2. 제18조에 따른 리걸테크서비스사업자의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의 폐쇄

# 제5장 벌칙

- 제2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0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제12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리걸테크서비스를 제공한 자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 3. 제14조 및 제15조에서 정하는 범위를 넘어서서 리걸테크서비스를 제공한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0조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자
  - 2. 제16조에 따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 제2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10조제3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2. 제17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3. 제18조에 따른 처분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을 한 자
  - ② 제15조제2항에 따른 고지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합리적인 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부과 지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3. 검토의견: 반대 의견

#### 가. 결론의 요약

- 1) 제정안의 주요 부분은 위헌적이거나 실익이 크지 않고, 변호사법의 주요 취지를 훼손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법원, 법무부 등 유관기관의 의견을 확인하고, 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2) 제정안에서 '기업이'리걸테크서비스를 일반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은 금융, 의료 등의 다른 영역의 신기술에 대한 규율방식과 비교했을 때, 체계에 맞지 않는 방안입니다.
- 3) 리걸테크는 모든 변호사 등 법률전문직이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하고, 국민에게 제공되는 경우 법률전문직이나 법무부 등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등에서만 제공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4) 제정안의 '리걸테크서비스'라는 용어는 '용역'만을 지칭하므로 부적절합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의 '무형재화'와 '용역'을 포괄할 수 있는 표현으로 수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5) 제정안 제2조 제2호 가목 '법률분야 종사자에 관한 정보제공', 마목 '법령, 판례, 주석 등 법적 분쟁의 해결을 위한 정보제공', 바목 '논문 등 법률자료의 제공'은 법률적 판단을 생성하는 것이 아니므로 나머지 목과 구분할필요가 있습니다.
- 6) 제정안 제2조 제5호의 법률사무종사자 중 '채권추심업체'를 제외할 필요가 있습니다.
- 7) 제정안 제3조, 제5조, 제8조에는 리걸테크 산업의 한계와 위험성을 명시하고 이에 대응하는 견제방안을 마련하는 등 리걸테크의 편익과 문제를 균형 있게 고려한 내용으로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8) 리걸테크 관련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제공하는 행위는 그 적절성과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9) 만약 '리걸테크 관련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제공해야만 한다면, 민간이 '리걸테크 관련 공공데이터'의 보유를 금지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리걸테크 관련 공공데이터'의 범위를 명시하고, '리걸테크 관련 공공데이터'는 법원·법무부·대한변호사협회 등의 소관하에 공공이 보유하고 민간측에 이용을 허락하도록 하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제정안에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 나. 구체적 검토 (항목별 검토 또는 논거)

1) 제정안의 주요 부분은 위헌적이거나 실익이 크지 않고, 변호사법의 주요 취지를 훼손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법원, 법무부 등 유관기관의 의견을 확인하고, 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정안의 내용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보면, ① 법률분야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리걸테크 서비스에 대한 규정 ②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리걸테크서비스에 대한 규정 ③ 리걸테크서비스의 진흥에 필요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① 법률분야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리걸테크 서비스는, 현행 법률로도 제한 없이 할 수 있는 것이어서, 제정의 실익이 없습니다.
- ②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리걸테크 서비스에 대한 제정안은, 의료 등분야와 마찬가지로 전문직과 기술 기업을 분리하여 합리적인 규제를 하고 있는 체제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위헌성이 있고 변호사법의 주요 취지를 훼손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금융, 의료, 법률 등 공공성을 가진 영역은, 신기술의 혜택을 소수의 업체가 독과점하지 못하도록 하고, 기술을 가진 측이 공공성을 유지하는 측을 종속시 키지 못하도록 하며, 기업이 해당 업계에 직접 진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제를 두고 있습니다.

제정안은 금융, 의료, 법률 영역 등의 공공성을 가진 업계에서 '혁신적 신기술'을 규율하는 방식과는 달리, '기술'을 가진 기업이 법률 시장에 직접 진입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제정안은 실익이 없거나 위헌성이 있어서, 변호사법의 주요 취지를 훼손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sup>1)</sup>, 법원, 법무부 등 유관 기관의 의견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리걸테크의 발전을 장려하면서도, 법률 전문직 제도의 근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제정안의 내용에 전반적으로 반대하며, 그 중 문제가 있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2) 제정안에서 '기업이' 리걸테크서비스를 일반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은 금융, 의료 등의 다른 영역의 신기술에 대한 규율 방식과 비교했을 때, 체계에 맞지 않는 방안입니다.

제정안 제2조 제1호는 리걸테크의 정의로 '법률분야종사자가 아닌 개인이나법인, 단체 등의 법률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활용되는 기술을 말한다.'고규정하고 있고, 제정안 제15조는 리걸테크서비스사업자가 <u>일반인을 대상으로</u>리걸테크서비스를 유상,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에게 법률사무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고, 변호사의 법률사무와 기업의 기술 개발을 분리하는 체계를 형해화하는 것입니다.

<sup>1)</sup> 제정안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부분을 보아도, 변호사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특별법과 같은 구성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는 '변호사는 리걸테크를 개발할 능력이 부족하므로, 리걸테크 개발과 서비스는 변호사에게 맡겨 둘 수 없고, 기업이 직접 할 수 밖에 없다'는 논리에의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는 변호사 등 법률분야 서비스나, 금융, 의료 등 공공성을 갖춘 영역에, 사기업의 진입을 규제해 온 구조와 어긋납니다. 이러한 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sup>2)</sup>를 통해 보다 정교한 규제체계를 마련해야할 것입니다.

법률서비스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주로 제공하는 서비스는 아닙니다. 이는 의료에 대한 규제와 유사합니다. 법률서비스가 민간기업 아래에서 제공되도록 하지 않고, <u>공공전문직이 독립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며, 기업과의 동업 등을 엄격하게 금지한 이유의</u> 대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법률서비스가 주주총회, 이사회의 영향 아래에서 제공되는 경우, <u>법률</u> 서비스를 통해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행동양식을 갖게 됩니다.<sup>3)</sup>

<sup>2)</sup> 제정안 제2조 제2호 나. '자동화된 법률자문'은 비변호사의 법률상담에 해당하고, 이미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 2022. 5. 26.자 2021헌마619 결정)에서도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2021. 5. 3. 전부개정된 것) 제5조[광고방법 등에 관한 제한]의 ② 변호사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자(개인·법인·기타단체를 불문한다)에게 광고·홍보·소개를 의뢰하거나 참여 또는 협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변호사등이 아님에도 수사기관과 행정기관의 처분·법원 판결 등의 결과 예측을 표방하는 서비스를 취급·제공하는 행위부분을 합헌으로 결정한 점, 이에 따라 모 사설 법률플랫폼에서 '형량예측 서비스' 제공을 종료한 점, 법무부징계위원회에서도 2023. 9. 26.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을 존중하여 '형량예측 서비스'를 이용한 변호사들에 대하여 혐의가 인정되나, 기간이 짧고 재발가능성이 낮다는 점에서 불문경고조치 한 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시를 규제할 새로운 시 규범을 제안하고 2024. 5. 21. 유럽연합 이사회에서 승인되었는데, 이 시 법률안 (ACT)는 법률과 기본권과의 관련성이 매우 높아, 고위험 시로 규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 점등도 참고.

<sup>3)</sup> 회사는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므로, 회사가 갖는 영리추구 속성을 사법절차에서 배제한다는 변호사제도 본연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 변호사는 상인이 아니며, 최대한의 보수를 효율적으로 얻는 것을 추구하는 집단이 아니다. 변호사제도는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알지 못하며, 경제적 이익을 최대화할 것을 요구하는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구조적 압력을 받지 않는다. 변호사 제도, 문화, 교육은 변호사의 이익 극대화를 고려하지 않는다. 이는 마치 법원의 판사나, 학술기관의 대학 교수가 '경제적 이익 극대화 그 자체'를 위해서 구조적으로 복무하지 않는 것과 같다. 이는 실제의 판사·교수·변호사 개개인이 경제적 이익에 관심이 있다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다.

- ② 법률서비스가 영향력을 가진 기업에 의해 제공되는 경우, 국가의 사법제도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u>기업들에게 유리하게 편향되는 경제적 유인(Incentive)</u>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u>기업들이 법무법인의 스폰서와 같은 존재가될 가능성이 있고, 여러 사기업들이 사법제도에 경쟁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u>있습니다. 이는 <u>사법 공정성을 왜곡하고, 구조적으로 사법불신을 초래</u>할 수 있습니다.
- ③ 법률서비스는 특성상 독립성과 이에 따른 전문성·윤리성이 요구됩니다.4) 법률서비스가 전문지식의 측면에서 적합하게 이루어진 것인지를 법률전문가가 아닌 이사회나 주주총회가 올바르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윤의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에서는, 윤리성을 지키기 위해 이익이 감소하는 결정을 하는 것이 곤란합니다.
- ④ 기술 기업이 직접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게 할 경우, 일부 AI 기술이 소수의 기업이나 법무법인에게 독점되어 부당한 영향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정 의약품이나 의료기기가 일부 병원이나 약국에만 제한적으로 공급될 수 없고, 모든 병원과 약국이 공정하게 의약품과 의료기기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의료전문직과 의료기술기업 간에 구분이 존재해 분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 분야 역시 이와 마찬가지로 법률전문직과 리걸테크 기업의 영역을 철저하게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취지 등에 따라, 각 법률전문직에 관한 법률은 <u>전문직과 사기업</u> 과의 동업 등을 금지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리걸

<sup>4)</sup> 직업을 뜻하는 'profession'이라는 말은 '공개적으로 맹세하다'라는 의미의 라틴어 'professus'에서 유래했다. 이 말은 먼 옛날 종교에서 비롯되었고 나중에 의학과 법률 쪽으로 퍼져나갔다. 비법을 전수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독점적 지위를 인정받은 동시에, 그만큼 그 힘을 현명하고 정직하게 사용할 의무도 짊어지게 되었다. 말과 글로 표현된 선서는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처신을 바르게 해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줬을 뿐만 아니라, 직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지켜야 할 원칙들도 제공해주었다. 댄 애리얼리(장석훈 역), 상식 밖의 경제학, 청림출판, 2008.

<u>테크를 변호사들이 직접 개발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리걸테크 업체가 직접 국민</u>에게 유·무상 법률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하는 것은 체계에 맞지 않습니다.5)

<u>첨단 기술에 의해 새로운 도구가 개발</u>되었다고 해서, 원래 <u>사기업이 개입</u> <u>할 수 없던 산업 영역에, 사기업이 개입할 수 있도록 구조가 변경된 사례를</u> 찾기는 어렵습니다.<sup>6)</sup>

사기업이 신기술을 도입해 혁신을 이룬 경우, 그 혁신적인 사기업의 역할은

의료기기회사나 제약회사는, 환자를 직접 고객으로 받아 진료를 하거나 약을 처방할 수 없다. 첨단의료기기를 의사나 약사가 직접 제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의료기기를 제조하는 업체가 의료업을 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지는 않았다.

심지어 은행, 병원의 경우, 그 '새로운 도구'의 성능이 명백히 우수하다. 예컨대 가장 우수한 은행가, 의사들이 모인 조직의 역량에 비해, 평범한 은행가, 의사들만 모여 있다고 해도 ATM기, 첨단 의료기기 등을 갖춘 조직의 역량이 더 뛰어나다. 반면 평범한 변호사가 리걸테크를 활용하더라도, 우수한 변호사의 역량을 넘어서지는 못할 것이다.

최고의 은행가들이 경영하지만 ATM기가 없는 은행 < 평범한 은행가들이 근무하지만, ATM기를 가진 은행 최고의 의사들이 진료하지만 의료기기가 없는 병원 < 평범한 의사들이 진료하지만, 의료기기를 갖춘 병원 최고의 변호사가 일하지만 리걸테크가 없는 경우 > 평범한 변호사가 일하지만 리걸테크가 있는 경우

6) 온라인 플랫폼이 없던 시기에도, 택시 기사나 배달 기사는 사용자에게 종속될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 택시 기사는 택시 회사나 콜택시 업체에 종속되어 있었다. 배달 기사는 식당이나 프렌차이즈에 종속되어 있었다. 원래부터 택시업, 배달업은 상인의 개입과 종속이 예정되어 있고, 여기에 대한 노동법적 보호의 방법론이 문제될 뿐이다. 이들에 대한 규제는 '어딘가에 종속되어 있다가, 다른 곳에 종속되는' 방식으로 변화했다. 택시 기사나 배달 기사가 어딘가에 종속될 수 있다는 근본적인 규범은 바뀌지 않았다. 전문직의 세계를 세속화하려는 장기간의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들은 두 가지 측면에서 택시 기사, 배달 기사와는 달랐다. 변호사는 전문직(profession)으로서. 변호사가 아닌 개인이나 기업에게 구조적으로 종속되는 것이 금지되었다. 결과적으로 자본시장의 이익추구 극대화 압력이, 변호사시장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없었다. 만약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자본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에 방해가 되는 독립성과 자율성을 내보인다면, 그 대표이사는 주주총회에 의해 해임되거나 행동의 수정을 요구받을 것이다. 이러한 구조로 인해 상인의 시장에서는 자본의 이익 극대화에 반하는 행동양식이 존재할 수 없다. 그러나 전문직은 의뢰인이 사실상 높은 보수를 제시할 수는 있을 지언정, 자본의 이익 극대화에 반하는 행동양식을 구조적으로 배제하는 경향성을 가진 것은 아니다. 전문직의 세계를 세속화하려는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변호사의 특수성은 보호되었다. 문제는 2000 년대 이후 온라인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이것이 '혁신'이라는 이유로 위의 두 가지 요소까지 배제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1960년대부터 시작된 변호사의 세속화 움직임과는 격을 달리 하는 것이다. 온라인 플랫폼은 과거와 달리 변호사를 종속하며, 자본시장의 이익 극대화압력을 변호사 시장과 연결시킨다. 이는 단순히 '노동법적 보호의 방식'의 변화에 그치는게 아니라. 과거와 현재의 변호사법 규범 자체가 변화하는 문제다.

<sup>5)</sup> 은행은 금산분리 규제를 받고 있다. ATM기를 제조하는 업체가 동시에 은행업을 할 수는 없다. ATM를 은행가들이 직접 제조할 수 없다는 이유로, 'ATM를 제조하는 업체가 은행업을 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지는 않았다.

<u>그 도구를 활용해 공공성을 가진 일을 하는 전문가들(의사, 은행, 변호사 등)</u>에게 그 첨단 도구를 판매하는 것입니다.<sup>7)</sup>

마찬가지로 리걸테크는 법률전문가들에게 판매되어서, 국민들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국민들은 금융·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은행, 병원을 찾습니다. 금융소비자가 ATM기 제조업체를 찾거나, 환자가 의료기기회사를 찾는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8)

법률소비자가 법률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를 찾는 체계를 유지 해야 합니다. 금융, 의료와 비교했을 때, 제정안은 법률전문직 제도의 근간을 완전히 변경하는 것이 됩니다. 여기에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며, 신중한 접 근이 필요할 것입니다.

기업이 법률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는 영역을 만드는 것은 사법불신을 초래하고, 기업이 법무법인의 스폰서가 되거나, 기업별로 법조계에서 세력을 구축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률서비스 회사들은 아직은 스타트업이거나 규모가 크지 않지만, 시간이 흐르면 여러 대기업과 관련성을 갖게 될수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기업과 법률전문직이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은 계속해서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가운데, 리걸테크의 혁신과 경쟁을 촉진할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3) 리걸테크는 모든 변호사 등 법률전문직이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 국민에게 제공되는 경우 법률전문직이나 법무부 등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등에서만 제공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sup>7)</sup> 의료기기회사는 의료기기를 병원에 판매했다. '첨단의료기기를 활용해 일할 수 있게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후진적인 법률이 의료기기 발전을 막고 있다'고 주장하지는 않았다. ATM기를 만든 회사는 ATM기를 은행에 판매했을 뿐이다. 'ATM기를 활용해 금융업을 할 수 있게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았다.

사기업인 리걸테크 회사가 <u>직접 국민과 접점을 가지고 법률서비스를 제공</u> 하도록 하는 것은 법률전문직의 체계에 맞지 않습니다.<sup>9)</sup>

리걸테크 회사도 변호사 등 법률전문직을 임직원으로 고용하면 직접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역량을 갖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직접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허용하면, 리걸테크를 서비스할 '기술'을 갖추고 '상업적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 측에서, 법률 전문성과 공공성을 가진 법률전문직을 종속시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리걸테크를 특정 회사가 소수의 법률전문직에게만 제공할 경우, 법률전문직의 공공성에 반합니다. 허위과장 광고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제약회사나 의료기기회사가 그렇듯이,<sup>10)</sup> 리걸테크 기업 역시 법률전문지과는 분리되어야 합니다. 변호사 등 <u>법률전문지으로 개업하여, 사기업의이해관계로부터 독립해야만 법률사무를 할 수 있다는 원칙을 지켜야 할 것</u>입니다.<sup>11)</sup>

따라서 인공지능 등 리걸테크서비스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기

<sup>9)</sup> 제약회사에는 많은 의사, 약사, 의학·약학 박사들이 근무하고 있다. 제약회사 구성원들이 가진 의료적 역량은 대다수의 소형 병원·약국 보다 높을 수 있으며, 심지어 일반적인 수준의 대학병원보다 높은 역량을 보유할 가능성도 있다. 그럼에도 제약회사에 근무하는 의사나 약사가 '진료, 처방'을 하려면 그 제약회사 임·직원의 신분으로는 할 수 없다. 의사나 약사로 개업하여, 사기업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해야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sup>10)</sup> 제약회사나 의료기기 회사도 의사·약사를 임직원으로 고용함으로서 직접 진료·처방을 할 역량을 갖출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직접 진료·처방을 하도록 허용하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제조할 '기술'을 갖추고 '상업적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 측에서, 의학과 약학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가진 의료전문직을 종속시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둘째, 의약품과 의료기기가 공익을 위해 모든 병원과 약국에서 고루 사용되지 못하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소수의 '제휴' 의료기관에만 고가에 판매될 수 있습니다. 셋째, 기업과 병원이 동업하며 '우리 회사는 특정 병원에만 신약과 신의료기기를 공급한다'고 광고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는 의료업의 공익성에 반하며, 허위과장 광고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sup>11)</sup> 환자의 전화번호부에는 병원과 약국만이 있지, 제약회사 직원이 없다. 금융소비자의 전화번호부에는 은행만이 있지, ATM기 제조업체가 없다. 이처럼 법률소비자의 전화번호부에는 변호사, 법무부, 법원 등 공공성을 가진 기관만이 있어야 할 것이다.

업이 직접 제공할 수는 없고 <u>법률전문직이나 법무부 등이 운영하는 홈페이지를</u> 통해 제공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어느 변호사나 법무법인이든 비용을 지급하고 리걸테크를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리걸테크 회사가 일부 법무법인과만 협력하는 등의 행위는 금지되어야 할 것이고, 다양한 리걸테크가 모든국민과 변호사들을 위해 공정하게 활용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리걸테크를 발전시키는 경쟁은 법률전문직 업계 바깥에서, 리걸테크 회사 끼리의 경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무법인이 리걸테크 기업과 동업·협업하며 이 경쟁에 참여, 연대하는 방식이 되는 것은 법률전문직 제도의 취지에 반할 것입니다.

기업이 법률서비스를 국민에게 직접 제공하여 이익을 얻는 방식을 허용하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법률전문직 제도가 구조적으로 사법신뢰를 보호하려고 하는 노력에 구조적인 문제를 발생시킬 것입니다. 리걸테크의 발전과 혁신, 경쟁을 장려하면서도, 법률전문직 제도의 취지를 보호할 수 있는 정교한 방안을 더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제정안의 '리걸테크서비스'라는 용어는 '용역'만을 지칭하므로 부적절합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의 '무형재화'와 '용역'을 포괄할 수 있는 표현으로 수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정안 제2조 제2호는 "리걸테크서비스"란 리걸테크를 활용하여 제공되는 법률 분야의 서비스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4호는 "<u>리걸테크서비스사업자"란 리걸테크서비스</u> 제공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고 규정하는 등, 제정안은 '리걸테크서비스' 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리걸테크서비스'라는 표현은 <u>용역만을 지칭</u>하며,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타인에게 판매하는 등의 <u>무형재화에 관한 영역을 포함할 수 없는 용어</u>로이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리걸테크서비스' 대신, <u>재화와 용역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적절한</u> <u>용어</u>로 수정하여야 향후에 '리걸테크사업'이나 '리걸테크서비스'의 의미에 대한 불필요한 혼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5) 제정안 제2조 제2호 가목 '법률분야 종사자에 관한 정보제공', 마목 '법령, 판례, 주석 등 법적 분쟁의 해결을 위한 정보제공', 바목 '논문 등 법률자료의 제공'은 법률적 판단을 생성하는 것이 아니므로 나머지 목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정안 제2조 제2호는 '"리걸테크서비스"란 리걸테크를 활용하여 제공되는 법률 분야의 서비스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이에 해당하는 6개의 목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 6개의 목 중 가목 '법률분야 종 사자에 관한 정보제공', 마목 '법령, 판례, 주석 등 법적 분쟁의 해결을 위한 정보제공', 바목 '논문, 보고서, 보도자료, 신문기사 등 법률자료의 제공'은 법 률적 판단을 생성하는 것과 무관하므로, 나머지 목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목 '법률분야 종사자에 관한 정보제공', 마목 '법령, 판례, 주석 등 법적 분쟁의 해결을 위한 정보제공', 바목 '논문, 보고서, 보도자료, 신문기사 등 법률자료의 제공'은 <u>이미 존재하는 정보를 디지털 방식으로 표시하여 이용자</u> <u>에게 보여주는 것</u>입니다. 이는 <u>종이로 된 법학교과서, 판례집, 법조인명부를</u> <u>판매하는 행위</u>와 본질적 성격이 같습니다.

교과서, 판례, 법조인명부는 그 형태가 종이든 디지털 방식이든, 법적 문

<u>제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생성하는 도구가 아닙니다</u>. 제3자에 의해 작성된 정보를 그대로 표시하는 것은, 책 등을 판매하는 기존의 전통적인 서비스와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교과서, 판례, 법조인명부를 디지털로 제공하는 산업은,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다는 점을 고려해' 특수하게 <u>규율하거나 육성, 진흥할 필요성이</u> 낮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sup>12)</sup>

<u>반면 제2호 나목, 다목, 라목은 인공지능 등을 활용해 법적 문제에 대한</u> 법률적, 윤리적 판단을 하는 영역이고, 혁신 기술의 활용 소지가 높으므로 <u>이</u>법의 주된 규율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6) 제정안 제2조 제5호의 법률사무종사자 중 '채권추심업체'를 제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정안 제2조 제5호는 "법률분야종사자"로 변호사, 변리사, 공인노무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행정사, 세무사, 채권추심업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 중 다른 법률분야종사자로 열거된 법률전문직은 법률 전문성을 가지고 용역을 제공하고 전문성·윤리성에 대한 통제를받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기업과 동업을 할 수 없는 제한 등이 있는 반면, 채권추심업체는 그에 준하는 '법률분야종사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제정안 제2조 제5호에서 채권추심업체를 제외할 필요가 있습니다.

7) 제정안 제3조, 제5조, 제8에는 리걸테크 산업의 한계와 위험성을 명시하고 이에 대응하는 견제방안을 마련하는 등 리걸테크의 편익과 문제를 균형있게 고려한 내용으로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sup>12) &#</sup>x27;법학 교과서'를 '물리학 교과서'나 '역사 교과서'와 구분하여 보호하거나 규제해야 할 것이 아님과 마찬가지다.

제정안 제3조는 '국가는 리걸테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국가는 법률분야종사자와 리걸테크서비스사업자간의 상생 협력과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는 리걸테크 산업 관련 대기업,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간의 상생 협력과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고, 제5조, 제8조도 이와 같은 취지로, 리걸테크산업의 진흥, 육성, 발전 등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정안의 제3조, 제5조, 제8조 부분을 리걸테크 산업의 한계와 위험성을 명시하고, 이에 대한 견제·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등 리걸테크의 편익과 문제를 균형있게 고려한 내용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8) 리걸테크 관련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제공하는 행위는 그 적절성과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제정안 제6조 제1항 제2호는 "<u>리걸테크 관련 공공데이터의 확보 및 공개</u> · 가공·유통"에 관하여 <u>정부가 사업을 추진</u>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정안 제6조 제2항은 "정부는 법령·판례 등 리걸테크 관련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제공할 수 있는 정보체계를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리걸테크 관련 공공데이터에는 법률 사건과 관련된 당사자의 민감 정보, 사생활에 대한 정보, 특정 당사자의 이익과 관련된 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을 정부가 수집해 민간에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의 문제, 법률과 관련된 윤리의 문제, 법률 사건 관련 민감 정보의 악용 문제, 변호사와 리걸테크 기업이 결탁해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해 사건 진행에서 이익을 얻으려는 문제 등, <u>통제 불가능한 영역에서 여러 논란</u>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리걸테크 관련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제공하는 행위는 그 적절성과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 9) 만약 '리걸테크 관련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제공해야만 한다면, 민간이 '리걸테크 관련 공공데이터'의 보유를 금지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리걸테크 관련 공공데이터'의 범위를 명시하고, '리걸테크 관련 공공데 이터'는 법원·법무부·대한변호사협회 등의 소관하에 공공이 보유하고 민간 측에 이용을 허락하도록 하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제정 안에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정안 제6조 제1항 제2호는 "<u>리걸테크 관련 공공데이터의 확보 및 공개</u> · 가공 · 유통"에 관하여 <u>정부가 사업을 추진</u>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정안 제6조 제2항은 "정부는 법령 · 판례 등 리걸테크 관련 공공데이터를 <u>민간에 제공할 수 있는 정보체계</u>를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공'이라는 용어는 '정부가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제공해, 민간이 소유하도록 한다'는 의미로 이해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이 공공데이터를 제공받아 '소유'하도록 하는 것은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 민간은 동등한수준의 리걸테크 관련 공공데이터를 이용하고, 이를 통해 공정하게 경쟁하고 혁신을 촉진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정안의 이와 같은 방향성을 다음과 같이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① 원칙적으로 민간이 '리걸테크 관련 공공데이터'를 보유하는 행위를 금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② '리걸테크 관련 공공데이터'가, 법령, 판례, 변호사정보, 사건과 관련된 국민의 정보, 사건 내용, <u>사건과 관련된 국민과 변호사의 정보, 사법분야와 관련된 자들의 행동양식 등의 빅데이터 등임을 명시</u>하여야합니다. ③ 이를 바탕으로 <u>정부가 '리걸테크 관련 공공데이터'를 민간이 이용하도록 허락하는 체계를 제정안에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u>

민간이 법령, 판례, 변호사 정보, 국민의 정보, 사건과 관련된 빅데이터 등을 직접 보유하게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① 소수의 독과점 기업에 빅데이터가 집중된 후에는, 후발주자의 진입이 어려워집니다. 독과점에 의해 혁신과 경쟁이 오히려 저해될 수 있습니다. 13) ② 다른 온라인 플랫폼들의 선례에서 볼 수 있듯이, 14) 소수의 독과점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면서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거나, 시장을 왜곡하고, 혁신이 점차 감소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15) ③ 사건과 관련된 국민의 정보, 사법제도에 관한 빅데

- 14) 온라인 플랫폼은 저비용으로 쉽게 사업을 시작할 수 있어보이는 특성과는 달리, 실제로는 철도산업 수준의 높은 시장진입장벽을 가져, 시장선점자가 생겨날 경우 후발주자의 진입이 철도산업만큼 어려운 특성을 갖는다. 온라인 소매판매 시장에 대한 진입장벽은 전통적 신발 소매시장 정도로 낮은가, 아니면 철도산업처럼 진입장벽이 높은가? 형식적으로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높은 진입장벽은 없으므로 일단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그러나 온라인 소매업체가 대량의 트래픽을 확보하고 수익을 창출해 낼 정도로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하려면, 새로운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거나 기존 회사의 고객을 끌어올 수준의 강한 브랜드 파워를 가져야 한다. 여러 논평가들은 온라인 플랫폼이 성공적이고 안정적으로 시장에 진입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진입장벽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다. 그 이유는 데이터 수집 및 네트워크 효과 등을 적극 활용해 선점우위 효과(first-mover advantage)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러 리걸테크 플랫폼 기업의 자유시장경쟁을 통해 더 편리하고 저렴한 서비스만이 시장에서 살아남게 하겠다'는 명목으로 신기술 결합 법률서비스나 중개서비스를 사기업들이 독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하더라도, 실제로는 극소수의 기업만이 남아서 사업을 영위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온라인 메신저, 택시 중개, 쇼핑, 숙박·여행 예약, 인터넷 포털 여러 온라인 플랫폼의 전례를 보아도 그러하다.
- 15) 김준익 교수는 "플랫폼 환경은 새로운 생태계 구축으로 혁신적 선순환 구조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됐으나, 예상과는 달리 몇몇 대형 기업이 지배하고 있다. 이러한 독점적 구조는 시장의 다양성과 혁신을 저해하는

<sup>13)</sup> 온라인 플랫폼 시장은 승자 독식(winner-take-all)의 특성을 강하게 갖는다. 온라인 플랫폼은 법률소비자인 국민과 변호사들에게 인프라를 제공하고, 그들의 데이터를 수집해 새로운 사업 부문을 세우는 데 활용할수 있다. 온라인 플랫폼은 데이터를 통제하며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시장을 체계적으로 주도하고, 극단적으로는 산업의 구조를 재편할 수 있는 위협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이 가지는 네트워크효과의 이점과 데이터 통제력은 시장 선점자에게 유리한 지위를 주고, 소수의 기업이 온라인 플랫폼 시장을지배하는 결과를 낳는다. 네트워크효과는 많은 변호사와 국민들이 사람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할수록, 해당 플랫폼의 서비스가 더 유용해지는 효과를 말한다. 이는 온라인 플랫폼만이 아니라, 전기, 도로, 통신, 철도 등 망 산업에서 강하게 드러나는 특성이다. 온라인 플랫폼이 갖는 네트워크효과는 '철도산업과 같은 수준의' 진입 장벽을 만든다. 2014년 미국은 온라인 평가와 리뷰 플랫폼을 제공하는 2개의 주요업체간합병을 문제삼았다. 그 합병에 대한 고소장을 통해 DOJ는 데이터 중심 산업이 전환 비용과 진입 장벽을증가시키는 네트워크효과의 특징을 지닌다는 점을 인정하기도했다. 빅데이터 독점은 특정회사에게지나친이익을 부여하게될 가능성도 있으며, 사법제도와 관련된데이터가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 빅데이터 독과점기업이 사법공정성에 반하는 형태의 영리를 추구하게만들 가능성, 개인정보 유출및악용우려, 후발주자의 빅데이터 수집을 곤란하게 해 혁신과 기역를 방해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이터 등을 특정 사기업이 보유할 경우 <u>사법불신을 초래</u>할 수 있습니다.<sup>16)</sup> ④ 변호사시장에 기업이 접근하거나 동업할 수 없도록 규정해둔 변호사법 등의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sup>17)</sup>

따라서 '리걸테크 관련 공공데이터'를 폭 넓게 정의하여, 이를 <u>법원·법무부·</u> 변호사단체 등의 논의하에 공공이 보유하도록 하고, 이러한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민간이 공정하게 이용하도록 허락하는 방향으로의 논의가 필요합니다.<sup>18)</sup>

주요한 원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거대 플랫폼 기업들이 자본과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경쟁을 억제하고 신생 기업 및 소규모 기업의 진입과 성장을 방해하는 현상이 세계 곳곳에서 점점 두드러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말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가칭)' 추진은 매우 중요한 조치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거대 플랫폼 기업들의 과도한 시장 지배력을 제한하고, 다양한 기업들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시장에 제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지배력 제한'과 '성장 저해'는 동의어가 아니다. 오히려 반칙적 행위를 배제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이 시장에서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다양한 기업들이 창의적인 솔루션을 제시하고 성장할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는 주장은, 온라인 플랫폼의 혁신성이 적정한 방법으로 통제되는 것이 오히려 다양성과 혁신, 창의성을 증진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김준익, "플랫폼 횡포 막되 혁신 생태계는 살려야", 「중앙일보」, 2023. 12. 25.

- 16) 온라인 플랫폼은 방대한 사용자 데이터를 얻게 되며, 시장을 선점한 기업이 데이터에 대한 통제를 하게 됨으로서 후발주자인 온라인 플랫폼이 진입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이는 공정한 사법제도의 절차적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해 "인공지능을 앞세운 소수의 IT기업들이 시장을 장악하는 순간 독과점으로 인한 폐해 등 각종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할 것임은 명약관화하다. 예를 들어, 법률사무처리 과정에서 엄청난 규모의 개인정보와 영업비밀을 수집하게 될텐데, 이러한 사건 관련 빅데이터가소수의 민간기업(더군다나 외국기업)의 수중에 들어간다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견해의 취지도 같다. 이병규, "인공지능(AI) 법률서비스에 대한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적용 여부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제18권 제2호, 2018, 155면.
- 17) 영리를 추구하는 회사가 변호사처럼 법률사무를 제공하고 있음으로서 생겨나는 모종의 영향력에 대한 의심, 신뢰붕괴가 생기는 문제가 있다. 사법절차는 실체적·절차적 공정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변호사법은 영리추구 회사가 변호사업에 주체적으로 관여하는 것을 금지해 이러한 공정성을 외형적·실체적으로 보장한다. 강석구 외 8인, 「리걸테크 도입 및 대응을 위한 법무정책 연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22, 27면.
- 18) 온라인 플랫폼이 갖는 특수성 때문에 자유시장경쟁이 사회 편익을 높이지 못하며, 독과점이 일어나는 경향이 있다. 일반적인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입하여 독점을 막고 경쟁을 유인할 것이다. 그러나 온라인 플랫폼은 '소비자 역시 독점을 원하고, 독점이 있어야 편리하다(독점의 이익)'는 특성을 갖는다. 이에 대해 리나 칸 교수는 '플랫폼은 독점을 허용할 때 오히려 소비자에게 이익이 있으므로, 독점을 허용하고 대신 플랫폼을 통제할 공익사업 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공익사업' 방식은 교통, 수도, 전기, 통신 등 '망 산업' 분야에서 주로 사용된다. 리나 칸은 이러한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다양한 규제를 취해 규모의 경제에 따른 장점을 활용하면서도 동시에 지배력을 이용하는 기업의 능력을 무력화시켜 나가 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온라인 플랫폼이 자연적으로 시장을 독과점하는 경향성과 '독점의 이익'을 받아들이되, 대신에 그 영향력을 공익사업의 형태로 규제하자는 것이다. 역사상 공익사업 형태로 규제되어

온 산업들은 수도, 전력, 가스, 철도, 해운, 통신 등이 있다. 공익사업 체제의 목표는 독점의 이점을 받아들이는 대신에 독점이 그 권한을 사용하는 방식을 제한해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과거 망 중립성 논쟁은 21세기의 통신 기반 설비를 규제하는 방법을 둘러싼 것으로, 인터넷 등 서비스에 공익사업의 규제를 적용하려는 움직임이었다. 최종적으로 채택된 망 중립성 체제는 전통적 공익사업인 공중운송사업자(common carrier)형태의 규제유형에 부합했다. Lina M Khan, "Amazon's Antitrust Paradox", The Yale Law Journal 125, 2016.